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04 발의연월일: 2025. 3. 7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구자근

김기웅 • 엄태영 • 김소희

김상훈 • 임종득 • 신동욱
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 시 농업·농촌 개발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한국농어촌공사가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 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.

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, 한국농어촌공사가 「한국농

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주려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3 중 "취득하는"을 "취득·소유하는"으로, "취득세"를 "취득세 및 재산세"로, "경감한다"를 "각각 경감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2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	제13조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
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 ① (생	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	2
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	
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	
를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감면	<u>2028년 12월 31일</u>
한다. 다만, 제1호, 제1호의2,	
제1호의3, 제2호, 제3호 및 제5	
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	
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	
하거나 농업인, 농업법인 및	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	
기금법」 제18조제1항제1호에	
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	
자에게 매각・증여하는 경우	
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	
된 취득세를 추징(제4호 및 제	
4호의2는 제외한다)한다.	
1.・1의2. (생 략)	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
1의3. 한국농어촌공사가 「한국	1의3
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	
법」 제44조에 따라 <u>취득하는</u>	<u>취</u> 득·소

100분의 50을 <u>경감한다</u>.

2. ~ 5. (생 략)

③・④ (생 략)

부동산에 대해서는 <u>취득세</u>의 <u>유하는------취득세 및</u> <u>재산세-----각각 경감한다</u>.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